

---

*“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”*

#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

---

2022. 11. 30.

관계부처 합동



# 목 차

I. 추진 배경 .....	1
II. 우리나라 중대재해 현 주소 .....	2
1. 중대재해 현황 .....	2
2. 진단 .....	4
III. 중대재해 감축 추진 방향 .....	7
IV. 정책 과제: 4대 전략, 14개 핵심과제 .....	9
1. 위험성평가 중심의 「자기규율 예방체계」 확립 .....	9
2.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 지원·관리 .....	15
3.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 .....	22
4.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.....	25
V. 추진 체계 및 향후 일정 .....	28



# I. 추진 배경

- 중대재해는 개인의 생명, 가족의 행복을 파괴하고, 사회적 갈등, 국가적 손실을 초래 →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핵심 국정과제
  - 그 동안 경제·기술 발전, 정책적 노력, 안전의식 향상 등이 결합 → 20년간 사고사망만인율을 1/3 수준으로 감축('01: 1.23 → '21: 0.43‰)
- 그러나, 우리나라 중대재해 규모는 여전히 경제적 수준을 훨씬 상회
  - '21년 사고사망자 828명, 만인율 0.43‰로 OECD 38개국 중 34위 → 영국의 1970년대, 독일·일본의 1990년대 수준\*
  - \* 영국 0.34('74.), 독일 0.42('94.), 일본 0.46('94.) vs 한국 0.43('21.)



- 최근 산안법 전면개정('20.1월), 중대법 시행('22.1월) 등 처벌을 강화 하였으나, 8년째 사고사망만인율이 0.4 ~ 0.5‰대 수준에서 정체
  - 중대법 시행에도 50인·억 이상 사업장 중대재해는 오히려 증가, 9~10월 대전 아울렛 화재, SPL 끼임사고, 안성 물류창고 붕괴 등 연이어 발생
- 제조·건설업 비중\*이 높고, 원·하청 이중구조화 및 안전 취약계층 (고령자, 외국인 등) 증가 → 안전보건 여건은 더욱 악화될 우려
  - \* 제조·건설 비중(%,'20): 한국 33.0 vs 미국 15.2, 영국 15.4, 독일 25.8, 일본 25.9

❖ 소득 3만불 선진국으로서 중대재해 감축 정체기를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안전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**분수령(Watershed)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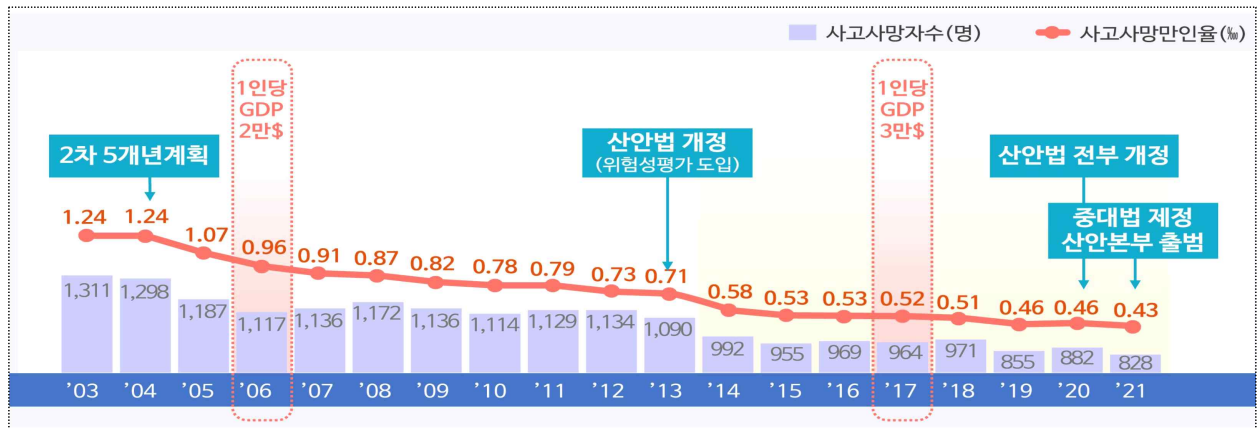
⇒ 기존 사고와 방식에서 탈피, 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중대재해 감축에 범 국가적 역량을 총 집결할 시기

## II. 우리나라 중대재해 현 주소

### 1 중대재해 현황

#### ① 매년 800명 이상 사고로 사망 → 8년째 만인율이 0.4~0.5‰ 수준에서 정체

- 국민소득 2만달러('06.)에 1.0‰ 미만 진입, 3만달러('17.)에 0.52‰로 경제 발전에 따라 감축되었으나, 현재는 정체기에 직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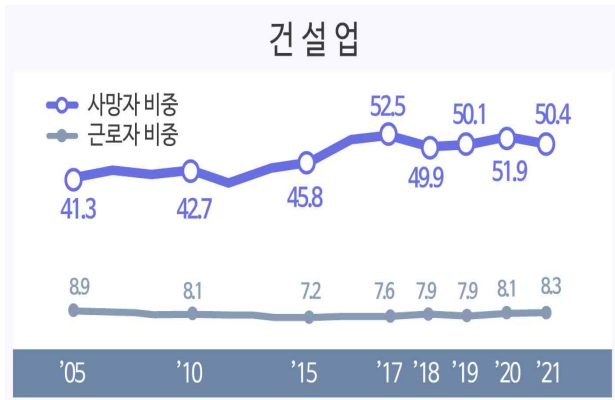


#### ② 소기업, 건설·제조업에서 대부분 발생, 하청도 상당수 발생

- (규모) '21년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사망 비중이 80.9%로 급속 증가
  -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 속도('10: 1.00 → '21: 0.58‰)는 50인 이상('10: 0.53 → '21: 0.20‰)에 비해 느림



- (업종) 건설(50.4%)·제조(22.2%)에서 중대재해의 72.6% 발생 → 건설·제조업 근로자 비중(26.7%)과 비교하면 3배 수준에 육박('21.)
  - 특히, 건설업은 근로자 비중 감소('05: 8.9 → '21: 8.3%)에도, 중대재해 비중 증가 추세('05: 41.3 → '21: 50.4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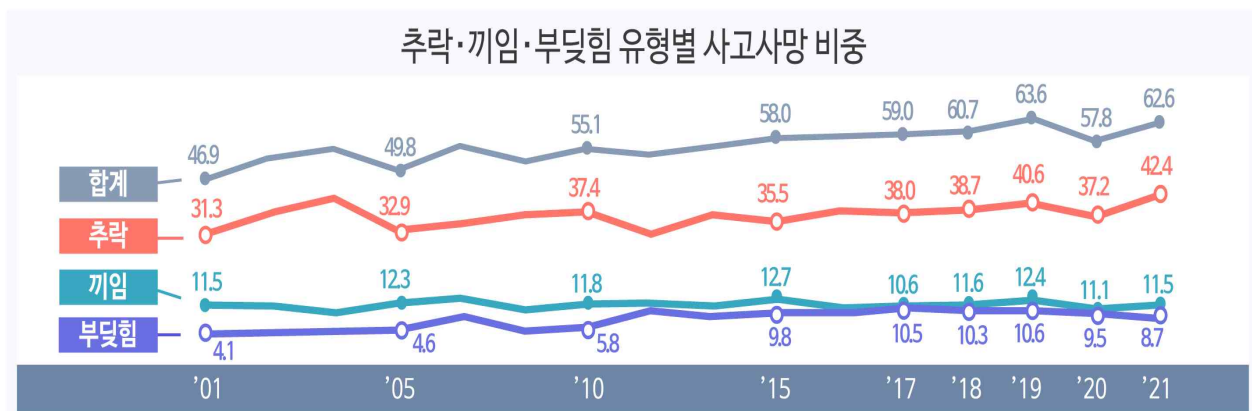


- (원·하청 관계) 하청 사망사고\*가 40% 수준 차지('17.~'21.)

\* 하도급이 관행화 된 건설(54%)·조선(73%)에서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 다발

### ③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가 여전히 절반 이상

- (유형별) 기본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 가능한 추락(42.4%)·끼임(11.5%)·부딪힘(8.7%) 등 사고가 전체의 62.6%('21.), 20년간 50~60% 내외로 고착화



- (원인별) ▲방호조치 불량(30.9%), ▲작업절차 미준수(16.5%), ▲위험성 평가 미실시(16.1%), ▲근로자 보호구 미착용(15.6%) 등이 사고 원인

\* 최근 3년간('19.~'21.) 재해조사의견서상 직·간접적인 재해 발생 원인 분석

### ④ 재발 사고, 고령·외국인·특고 등 중대재해 발생 증가

- (재발) 재발 사고 중 첫 사망사고 발생 후 1년 이내 재발 37.9%('01.~'21.)
  - 특별감독을 실시한 83개 기업('18.~'22.8월) 중 12개 기업에서 재발
- (취약계층) 고령자(55세 이상)가 58.5%, 외국인 12.3%('21.)로 지속 증가
  - '21년 특고 사고사망 36명('17년 5명), 최근 5년간 급격히 증가

### ①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·제거하는 예방 체계 미비

- 법령에 의한 규제·처벌 위주 행정으로 인해, 기업은 타율적 규제에 길들여져 자체적으로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시스템과 역량이 빈약
  - 대기업을 자체적으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으나 내실 있는 이행에 이르지 못하고, 중소기업은 예방역량 자체가 부족
- 중대법 시행('22.1.27.) 후에도, 기업은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투자를 늘리기보다 대형 로펌 자문 등을 통한 처벌 회피에 집중하는 경향
  - 중대법 적용 50인(억) 이상 기업(공사현장)의 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 ('22.10월말 기준, 전년동기 대비 +17명)
- 이로 인해 과거 발생 재해와 같거나 비슷한 사고가 재발되고 있는 상황
  - \*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사업장의 재발 확률이 일반 사업장에 비해 6.7배 높은 수준 ('01~'20. 중대재해 통계 분석)

####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 사례

- 5년간 동일·유사한 유형의 경미한 끼임사고 15건 발생 → 결국 끼임 사망 발생(SOO)
- 도급순위 5위 이내 건설업체에서 1년에 4건의 중대재해 발생(DOO 건설회사)
- 사망사고 후, 특별감독 기간 중에 사망사고 재발(SO 화학회사)

- 정부의 중대재해 발생 원인 조사보고서가 기업에게 공유되지 않아 반면교사(反面教師) 자료로 미활용



- 산업안전보건행정사의 가장 큰 과오는 과거 발생한 중대재해로부터 충분한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.

- 영국·독일 등 선진국은 70년대부터 규제와 처벌의 한계를 인식하고, 「자기규율 예방체계」를 구축하여 사고사망만인율을 획기적으로 감축
  - 정부가 제시하는 하위규범·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규범 마련
  - 위험성평가 등을 핵심 수단으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발굴·제거 → 사고 발생 시, 기업의 예방 노력 적정성을 엄정히 따져 결과 책임 부여





해외사례

- [영국: 로벤스보고서('72.)] 촘촘한 '법과 규제'만으로는 중대재해 예방에 근본적 한계 인식  
⇒ '자기 규제', '자기 통제', '자기 모니터링'에 기반한 '자기규율 예방체계'로 전환
- [독일] 조합주의 문화 및 업종별 협회 중심 노사자치입법으로 '재해예방규칙' 제정
- 선진국은 경제적 제재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 동기 부여 및 제재의 실효성 확보

## 2 현장의 변화를 이끌지 못하는 법령 및 감독, 지원 행정

- 산업안전보건법령이 1,220개 조항\*으로 방대하고 세세하게 규정하여 현장 수용성이 낮고, 자발적인 예방 역량 형성 동기 저해

\* 산업안전보건법 175조, 시행령 123조, 시행규칙 243조, 안전보건기준규칙 679조

- 매년 2~3만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산업안전감독도 규정 위반 위주의 적발과 처벌에만 중점\*

\* 사고 다발 요인보다는 적발하기 쉬운 서류상 점검(안전관리자 선임, 교육 등)에 치중

- 우리나라도 '13년 위험성평가를 도입했으나, 자기규율 방식과 맞지 않는 現 법·제도 시스템 하에서 미작동

\* 기업의 66.2%가 위험성평가 미실시('19년 작업환경 실태조사)

- 대기업은 서류 작업(paper work) 등 일시적·면피성 대응에 치중, 중소기업은 안전관리를 방치하거나 포기하는 사례 발생

- 민간 기술지도는 법 위반사항 위주로 지적, 재정지원\*도 공급자 중심 구조로 기업의 위험요인 개선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

\* 산재예방 예산(억원): ('19) 3,644 → ('20) 4,198 → ('21) 9,770 → ('22) 10,921

## 3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일로만 인식

-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모든 주체의 참여가 중요하나, 안전보건 관리자 등 일부 특정인만이 산업안전보건 책임이 있다고 인식



현장의 목소리

- 현장에서는 '생산은 우리들이 하고 안전은 안전보건 스태프가 하는 것'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어 책임 있는 안전보건 행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.

- 안전을 비용으로만 접근하고, 생산에 부가적 요소로 치부하는 경영 문화·관행이 여전
- 안전은 근로자에게 '권리'이자 '의무'임에도 그동안 사업주 책임에 부가된 근로자의 '권리' 중심으로 강조



해외사례

- [일본] 노동안전보건법령에 사업주 의무에 협력하는 근로자 준수사항 조문별 규정
- [미국] OSH Act 및 연방규칙에 근로자 의무 상세히 규정

- 근로자가 스스로를 보호대상으로만 여겨, 안전보건주체로서의 현장 참여 및 실천적 행동 부족

\* 보호구 미착용, 안전장치 제거 등 기본적 안전수칙 미준수도 사업주 책임 귀결

- 원·하청 간 안전관리 역할도 명확하지 않아, 서로 책임을 방기함에 따라 하청근로자 중대재해 예방에 회색지대 발생



현장의 목소리

- 원청은 하도급 계약 시 적정 수준의 안전보건 예산을 지급하지 않고, 하청은 모든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원청에 떠넘기는 경우가 빈번합니다.

#### 4 안전 의식과 문화는 여전히 미성숙

- '생산' 우선 관행과 '빨리빨리' 문화가 여전히 잔존하고, 사회 전체의 '안전을 보는 눈'이 취약



현장의 목소리

- 선진국은 경미한 고장이나 장애 요인도 허투루 넘어가지 않고 작업절차서가 있어야만 작업을 시작하나, 우리는 절차서가 없더라도 직관이나 경험에 의존해서 작업을 합니다.

- 안전의식과 안전문화 활동도 범사회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, 단발성의 형식적인 캠페인 위주로 진행



전문가 의견

-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안전문화가 정착되어 경영자가 안전을 '법과 규제'가 아닌 '사회 전반의 문화적 압박'으로 느낄 때 중대재해 감축 가능

- 안전보건 교육을 법령상 사업주 의무로 규정하고 교육내용과 방식 등 획일적으로 규제, 점검도 서류만 확인 → 안전의식·문화 형성에 한계

### Ⅲ. 중대재해 감축 추진 방향

#### 1

#### 기본 원칙

- ① **[책임성]** 처벌·감독을 통한 타율적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안전주체들의 책임에 기반한 '자기 규율'과 '예방 역량' 향상을 지원
- ② **[현장성]** 안전보건 정책은 결국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견인해야 하므로 현장 근로자에게까지 정책이 단절 없이 전달되도록 설계
- ③ **[혁신성]** 안전보건 법·제도 및 정책, 중대재해 예방기법과 방식, 안전의식과 문화 전반에 걸쳐 기존의 관점을 넘는 혁신적 방안 모색

#### 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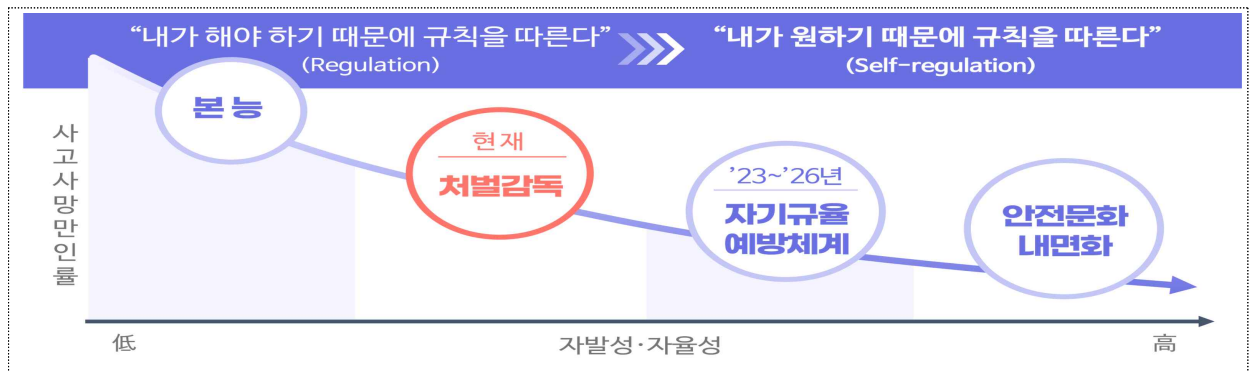
#### 추진 방향

- 우리의 現 상황은 안전 선진국의 70~90년대 수준으로, 유사하게 정체기를 경험한 선진국(예: 1970년대 영국) 사례를 벤치마킹 할 필요



- [영국: 로벤스보고서('72.)] 촘촘한 '법과 규제'만으로는 중대재해 예방에 근본적 한계 인식  
 ⇨ '자기 규제', '자기 통제', '자기 모니터링'에 기반한 '자기규율 예방체계'로 전환
- [독일] 조합주의 문화 및 업종별 협회 중심 노사자치입법으로 '재해예방규칙' 제정

- ⇨ 우리나라도 수동적·타율적 규제인 '처벌·감독 단계'를 넘어 '자기규율 단계'에 진입하고, '안전문화 내면화 단계'를 지향



#### 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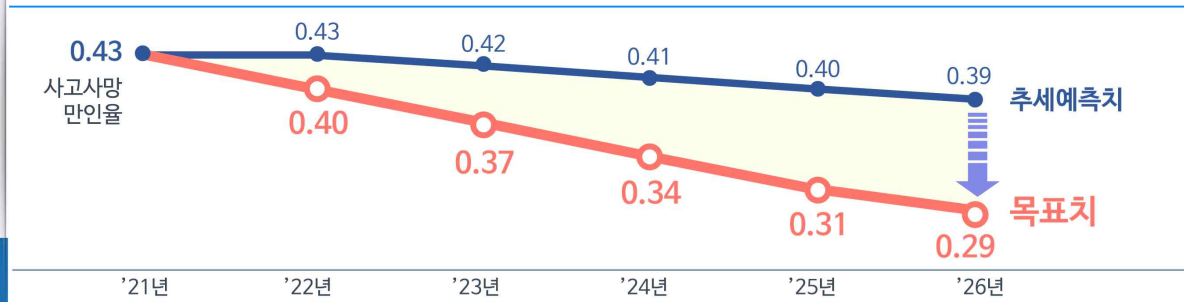
#### 추진 목표

- '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 0.29‰로 감축 →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

출근에서 퇴근까지, 입직에서 퇴직까지

##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, 행복한 대한민국

목표 '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 0.29%로 감축 →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



원칙

책임성

현장성

혁신성

## ①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

-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핵심수단으로 위험성평가개편
- 자기규율 예방체계 뒷받침 위한 감독행정, 법령·기준 정비

+

## ②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지원·관리

50인미만 80.9%

중소기업  
집중지원

건설·제조 72.6%

스마트기술·장비  
중점 지원

추락·끼임·부딪힘 62.6%

8대 요인  
현장중심 특별관리

하청 40%

원하청  
상생협력 강화

새로운 위험

산업구조 및  
기후변화 대비

## ③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·문화 확산

- 근로자의 안전보건 책임과 참여 강화
- 안전문화 캠페인 확산(중앙-지역-업종)
- 현장 중심 안전보건교육 강화

## ④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

- 전문기관 간 연계 협업
- 응급의료 비상상황 대응체계
- 중앙-지역 협업·거버넌스

## IV. 정책 과제: 4대 전략, 14개 핵심 과제

### 전략1 위험성평가 중심의 「자기규율 예방체계」 확립

❖ 노·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요인을 진단·개선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, 예방노력에 따라 결과에 책임을 지는 「자기규율 예방체계」로 패러다임 전환

- ① '위험성평가' 제도를 개편, 「자기규율 예방체계」의 핵심수단으로 정착
- ② 산업안전 정기감독은 '위험성평가 점검'으로 전환하되,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 및 기획감독을 통해 엄중 제재
- ③ '위험성평가' 현장 정착 지원을 위해 법령·기준 체계 정비 추진

### 1. 예방과 재발방지의 핵심수단으로 위험성평가 개편



현재 모습

- '위험성평가'는 노·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·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·이행하는 제도
- '13년부터 강행성 없이 도입 → 법령 및 감독체계는 그대로 유지하여 미작동
- 대기업은 일률적, 중소기업은 복잡하고 어렵다는 불만 → 형식적 운용

#### ① 위험성평가 단계적 의무화

- 대기업(300인 이상)부터 위험성평가 의무화('23.~),  
중소기업(300인 미만)은 업종·규모별로 연차적 적용 확대('24.~)

☞ 적용 시기: ('23년 내) 300인 이상 → ('24.) 50~299인 → ('25.~) 5~49인

- 미실시, 부적정 위험성평가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벌칙 신설 ('23.~, 산안법 개정)
- 지도·점검 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, 개선대책(재발방지)의 적정성, 노·사 참여 여부, 현장 적용성 등 위주로 확인
- 위험성평가 실시 기업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, 자체 노력 사항을 수사자료에 적시 → 검찰·법원에서 구형·양형 판단 시 고려

## ② 「핵심 위험요인」 발굴·개선 중심으로 운영

- 기업 내 아차사고 및 실제 사고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·공정을 중점적으로 위험성평가 실시
- 아차사고 등 사고 분석 지원을 위해 「재해원인 분석·공유 매뉴얼\*」 마련(24), 세부 업종별 주요 사고 사례 등도 제공(23.)
  - \* 노·사, 전문가 등 논의를 통해 업종·규모별 현장 적용 상황 등 평가를 거쳐 매년 보완
  - 중대재해 발생 원인이 담긴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및 '중대재해 사고백서\*' 발간(23~) →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적자원으로 활용
  - \* 사고 발생부터 수습까지의 과정, 기업 문화,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구조적 문제까지 분석·제시
- 아차사고와 휴업 3일 이상 사고에 대해 모든 근로자에게 사고사례를 전파·공유하고, 위험성평가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·교육토록 지도
  - 점검 시, 근로자 인터뷰 등을 통해 사고사례 인지·공유 여부 중점 확인

## ③ 기업 규모·작업별 특성에 맞는 위험성평가 적용·확산

- 중소기업 등이 쉽고 간편하게 위험요인을 발굴·평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, OPS\*(One Point Sheet) 방식 등 다양한 평가 기법을 개발·보급(23.~)
  - \* 사다리, 고소작업대 등을 사용하는 단순한 작업은 작업 전 1페이지 서술식 위험성평가 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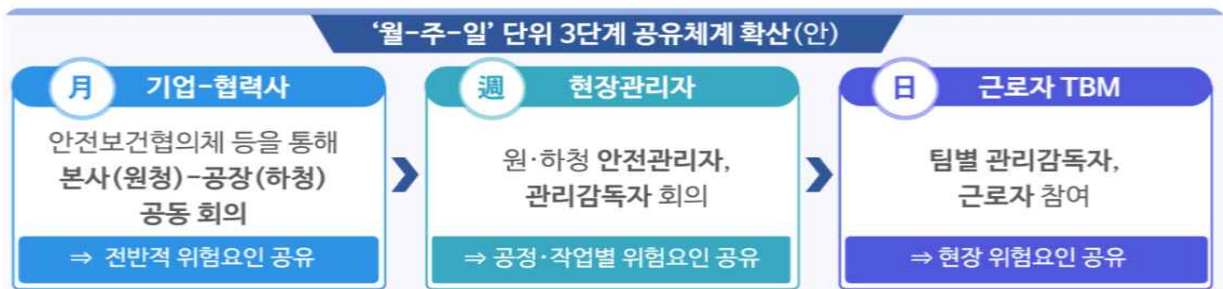
### < 위험성평가 단계별 개선(안) >



- 사업장 여건·특성에 맞게 업종·직종, 유해·위험요인\*별로 매뉴얼 및 우수사례 등 보급(23.~)
  - \* (예) 고령자(55세 이상) 비중, 산재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고령자 유해·위험요인을 반영

#### 4 위험성평가제 현장 실행력 제고

- (노·사 참여) 위험성평가 쏠 단계에 노·사 참여 및 협업 강화
  - 위험요인 파악, 개선대책 수립 단계 뿐 아니라 사전준비, 위험성 추정·결정 등 전체 단계에 근로자 참여 확대
  - 개선대책, 재발방지대책 수립·이행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에 보고·공유(분기별)
- (TBM 활성화) 사업장별 정기(연 단위)·수시(공정·설비 변경 시) 평가 결과가 현장 근로자까지 상시 전달·공유될 수 있도록 구조화(23~ 사례 보급)



- '작업 전 안전점검회의' TBM(Tool Box Meeting)을 현장 공유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토록 업종·공정별 'TBM 활용 가이드' 보급(23~)
  - \* (예) ▲건설: 현장별 매일 TBM ▲제조: 본사-공장 간 사내방송, SNS 등 활용한 공유체계
- 스마트기기를 통해 위험성평가 결과가 현장 근로자까지 실시간 공유되는 모바일 APP 개발·보급
- (관리감독자 역할 강화) 작업·공정을 가장 잘 아는 관리감독자가 위험요인 파악 등 핵심역할을 하도록 가이드 마련 및 교육\* 강화(23)
  - \* 근로자 지도·감독·훈련, 위험요인별 관리 방법 등 핵심 직무별 표준 교육과정 개설
- (위험성평가 운영 시스템) 위험성평가 쏠 단계를 현장에서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운영 시스템 구축(23.)
  - 동종·유사 기업과 위험성평가 운영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'자가 진단' 시스템 마련
    - \* 사업장 지도·감독, 컨설팅 시 기업의 위험성평가 수준을 측정·입력, DB 구축 → '모바일 앱'을 통해 사업주 자가진단 결과와 동종·유사 평균 수준을 비교, 미비점 확인·개선
- (사례 공유) 권역별 포럼 개최, 위험성평가 경진대회 등을 실시·개최하여 저변 확대

## 2. 산업안전 감독 및 행정 개편

### 1 정기감독: 위험성평가와 예방 중심으로 전환



현재 모습

- 산업안전감독('21. 2.7만개소)은 정기감독(1.1만개), 기획감독(위험요인별 1.5만개), 특별감독(일부 대형사고 발생 사업장) 체계로 실시·운영
- 현장에서는 감독에 적발되면 실질적인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"재수없다"고 치부하고 넘어가는 관행

#### ○ (감독 방향) 정기감독을 '위험성평가 점검'으로 전환

- 위험성평가 실시·이행\*, 사고사례 분석 기반 재발방지대책 수립·시행,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·이행\*\* 여부를 필수 확인('23. 감독계획)

\* 근로자 인터뷰 등을 통해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인지, 참여 여부, 사고사례 공유 등 중점 확인

\*\* 자체 안전보건관리규정 이행,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, 평상 시 안전관리 관행 등

- 소규모(50인 미만) 사업장은 안전보건 수준, 위험기계·기구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하여 컨설팅, 재정지원 사업으로 연계

#### ○ (대상 선정) 산재통계(보상) 분석 등을 통해 재해 발생 경향성을 사전에 확인 후 감독 방향 설정 → 고위험 기업 자동 선정\*('23.~)

\* 빅데이터(기업+위험요인+예방지원) 및 AI 분석 기반 사고위험 예측 모델 개발('23.)

- 지역별 실시간 재해 현황, 산업·고용동향 등에 따라 위험 업종을 사전에 포착하는 '디지털 산업안전지도\*' 구축·활용

\* 워크넷상의 '디지털 기업지도('21.7월~)와 연계하여 기업별 고용현황과 산재예방 정보를 결합 제공

### 2 수사·기획감독: 결과책임 확보 및 재발방지에 중점

#### ○ (수사) ①중대재해 발생원인 철저히 규명, ②"반드시 지켜야 할" 의무\*(Golden Rule)의 위험성평가 반영 여부 중점 수사 → 엄중 처벌·제재

\* 사고사례, 재발방지 대책 등을 분석해서 "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"와 "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"를 특정(例: 정비작업 중 기계 끼임사고 → Lock Out, Tag Out)

- 위험성평가를 토대로 충분한 예방 노력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수사 시 반영



- **(기획감독) 사고 원인**(예: 끼임 방호조치 부실)에 따라 동종·유사 업종에도 사고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 기획감독 실시
  - \* (예) 식품제조업체 등 14만개 대상으로 식품혼합기 등 위험기계 기획감독
- 사고재발 방지대책 마련·이행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서 산재 미보고, 은폐에 대한 기획감독 실시(반기별)
- **(작업중지)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기간·범위, 해제절차 등 합리화, 급박한 위험 시 사전 예방 목적의 '한시 작업중지' 예외적 실시 근거 마련\***
  - \* 현장 운영사례, 해외 사례 등 검토·논의를 통해 방안 마련 → 산안법 개정 추진('23.~)
- **(사후관리) 감독 후, 보고명령 제도(사업장 개선계획 제출), 확인감독 등을 통해 개선 상황 지속 확인**

### ③ 중대재해 발생 여부를 산재보험료율에 반영

-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산재보험료 할증('24.~, 보험료징수법 개정)
-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, 보험료 징수 상한액을 現 5배에서 10배로 상향('24.~, 보험료징수법 개정)

### ④ 산업안전감독관 역량 강화

- 입·보직 단계별\* '역량 강화 프로그램' 개발·운영('23.) → 맞춤형, 실습·체험형 교육 강화
  - \* 실무경력에 따라 ① 기초 안전수칙 점검·감독 → ② 중대재해 수사 → ③ 위험성평가 점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순으로 커리어패스 설정·관리

## 3. 산업안전보건 법령·기준 정비

### ①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 현행화

- 기술 및 산업구조 변화, 위험기계·기구별 안전기준의 현장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기준규칙(現 679개 조문)을 현실에 맞게 정비('23.)
  - \* ▲반도체 공장 등의 비계설치 기준, 수소산업 안전기준 등 보강·신설, ▲現 상황에 맞지 않는 오래된 규정 현행화, 중복조항 정비 ▲조문명 및 내용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비 등

## 2 위험성평가 관련 법령·기준 전면 정비

- 안전보건기준규칙을 처벌 규정과 예방 규정으로 분류(~24, 법령 개정)
  -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핵심규정은 처벌이 가능토록 법규성 유지
    - \* (예) 처벌규정: "고소작업에 대해서는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"
  - 산재예방을 위해 선택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항은 예방규정으로 전환 → 고시, 기술가이드 형식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
    - \* (예) 예방규정: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, 안전대 또는 추락방지망 등 설치 기준의 세부 내용은 고시, 기술가이드로 제공

## 3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간 정합성 제고

- 쉰 부처 관계 법령\*의 보호범위, 적용기준 등 실태 파악(23. 관계부처 공동 실태조사) → 중복 규제 개선 및 법령 간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\*\*
  - \* 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, 광산안전법, 원자력안전법, 항공안전법, 선박안전법 등
  - \*\* (예) 他 법령 상 안전보건관리 기준이 산안법령에 미달 시, 산안법령을 보완 적용

## 4 중대재해처벌법의 불확실성 해소

- 위험성평가의 적정한 실시, 재발방지대책 수립·시행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사항 중심으로 처벌요건 명확화
  - 상습·반복,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확충
-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 강화, 안전투자 촉진을 위해 선진국 사례 등을 참조하여 제재방식 개선, 체계 정비 등 강구



해외사례

- 선진국의 경우 경제적 제재를 통해 "안전보건 미확보 사업의 불법적 이익을 환수"하는 방식으로 중대재해 예방 동기 부여 및 제재의 실효성 확보
-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기업에게 상한 없는 벌금형 부과(매출액의 8.6배 벌금 부과 사례, 대기업은 법원 양형기준에서 매출액 40%로 상한 설정)

- ☞ 산안법·중대법 정비를 위한 「산업안전보건 법령 개선 TF」 구성·운영(23.上)
  - 노·사·정이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개선안 논의·마련
  - TF 內 전문가, 안전보건공단, 노사 등이 참여하는 「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 정비 자문회의」 별도 운영

## 전략2

#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 지원·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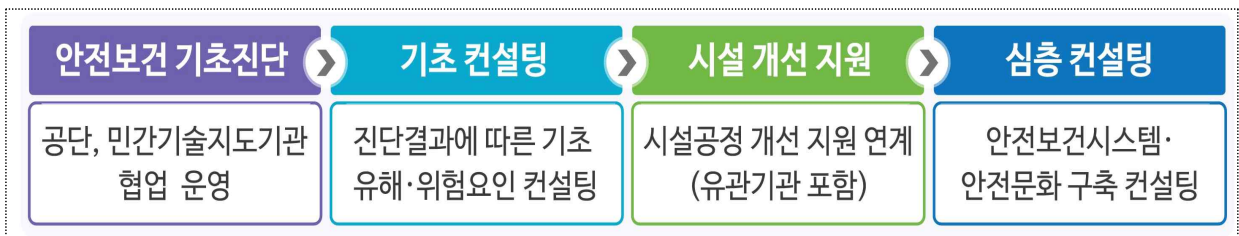
- ❖ [50인 미만 사망사고 80.9%] 중대재해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역량 자체가 부족 ⇨ 안전관리 역량을 전폭적으로 지원
- ❖ [건설·제조업 72.6%] 건설·제조업 중대재해 다발은 현장의 불안전 행동과 기계·설비 결함 등이 중첩된 구조화된 문제 ⇨ 스마트 기술·장비 중점 지원
- ❖ [추락·끼임·부딪힘 62.6%] 3대 사고유형 대상으로 특별 관리대책 시행
- ❖ [하청 40%] 원·하청 안전관리 역할을 명확히 하고, 원·하청 간 상생 안전 협력을 통해 하청업체의 예방 역량 제고 지원

## 1. 중소기업: 안전관리 역량 향상 집중 지원

### ① 중소기업 「안전일터 패키지」 프로그램 제공

- 신규(6개월 內) 또는 고위험 중소기업 대상 '진단-시설개선-컨설팅'을 종합 지원하는 「<sup>가칭</sup> 안전일터 패키지」 프로그램 제공(24.~)

< 안전일터 패키지 단계별 서비스 제공(案) >



- 사업자등록 정보 연계(국세청)를 통해, 신규 설립 사업주에게 산재 예방 정보 및 교육, 「안전일터 패키지」 프로그램 참여 안내(23.~)

### ② 맞춤형 안전시설 및 인력 지원 확대

- (시설 지원) 소규모 제조업(50인 미만)의 노후·위험 공정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「<sup>가칭</sup> 안전 리모델링 사업」 추진(24.~, 現 안전투자혁신사업 개편)

- 기업의 위험성평가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포괄적 방식으로 지원 품목·시설 확대(23.~)

\* (現) 지원품목 고정, 공급자 중심 → (改)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, 수요자 중심

- **(인력 양성) '26년까지 안전보건 인력 2만 명 이상 추가 양성**
  - \* 現 안전관리 위탁 사업장(50~299인 사업장, 약 1.9만 개소)에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목표
  - 전문대학에 기업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및 일학습병행 교육과정 확충,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 신설 및 교과목 확충 추진
  - 안전보건·공학 등 관련 강의과목 이수 실적과 안전보건관리자 자격 기준을 연계·검토(23.)
- **(인력 지원) 업종·규모별 직무 분석을 통해 「안전보건 인력 운영 가이드」 마련(23.) → 안전관리 전담인력 추가 선임 시, 재정지원 검토(24.)**
  - 안전보건 자격 소지자 등을 '안전보건 인력뱅크'로 운영 → 지역 고용센터와 연계, 안전관리자 구인 필요 기업에 우선 채용지원(23.~)
- **(산단 특화) 소규모기업(50인 미만)이 집적된 주요 산업단지에 공동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지원(23. 시범 운영 후 확대 검토)**
  - \* (例) 공모를 통해 '안전보건지원센터' 등 선정·운영 → 산업안전 전문 교육 및 컨설팅 등 실시
  - 노후화 산업단지 내 종합 안전진단, 교육,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「화학 안전보건 종합센터\*」 신설·운영(23. 여수·울산 → '24.~ 확대)
  - \* 現 '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'(7개, 지방노동관서 內 '부서' 형태)의 기능·인력 등 확대·개편

### 3 민간 기술지도를 위험성평가 기반으로 전환

- \* (現) 민간 기술지도(50인 미만, 34.6만개소),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사업(3.5천개소)
- 개별 안전조치 미비점 지적 위주에서 위험성평가 컨설팅으로 전환, 시설·공정 전반의 위험요인 발굴 및 진단까지 기술지도 지원
- 위험성평가 컨설팅(기술지도) 결과에 따라, 재정지원 사업으로 연계한 경우 신속 지원\* 확대
  - \* 지원절차 간소화 및 일부 서류 제출을 생략하는 'Quick-pass' 우선 적용

### 4 소규모기업 대상 안전보건 인증제 마련

- 現 위험성평가 인정제도를 개편하여 소규모기업의 안전수준 확인·향상을 위한 인증제도 신설(24.)
  - \* 23년 연구용역 및 고용부·공단·전문가 중심 '인증제도 개편 TF' 운영 등을 통해 검토·논의

## 2. 건설·제조업: 스마트 기술·장비 중점 지원

① **건설업** \* ▲전체의 50.4% ▲추락사고가 59.5%, ▲120억↑ 31.2% 1~120억 48.7% 1억↓ 20.1%

- 근로자 안전확보 및 구조물 붕괴 등 예방을 위해 붕괴 징후 감지센서, AI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건설현장에 특화 지원(국토부, '23.)
-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,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촉진 (現: 스마트 장비 구입·임대 비용의 20% 내 → '23.~: 사용한도 단계적 확대, 한도 폐지)

< 건설업 스마트 안전시설·장비(○○물산 아파트 재건축 현장 사례) >

인공지능 인체감지 경보장치	건설장비 접근경보 시스템	추락보호복
		
장비의 시카메라가 설정거리 내 사람을 인식하여 운전자에게 알림	감지태그를 부착한 작업자가 장비에 접근 시 경고 및 진동 발생	추락시 자동으로 에어백이 작동하여 신체주요부위 보호

② **제조업** \* ▲전체의 22.2% ▲끼임사고가 31.5%, ▲50인↑ 26.7%, 50인↓ 73.3%

- '스마트공장' 사업에 산재예방 협업\* 모델(例: Safe & SMART 팩토리) 신설 (중기부 협업, '23) → 설비·장비 제작단계부터 안전장치 내장\*\* (built-in) 유도
- \* (案) ▲(고용부)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선정·관리 ▲(중기부) 스마트공장 구축 계획수립 및 예산지원
- \*\* 안전장치 내장형 설비는 선진국 산재사망사고 감축의 주요 요인('89, OECD 고용전망)
- AI 카메라, 자동 위험알림 등을 통해 불안정한 작업 환경을 모니터링 → 위험 상황에 신속 대응하는 안전관리 시스템 확산

< 제조업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·장비(○○발전, ○○차 해외공장 사례) >

AI 카메라	통합 모니터링 시스템	웨어러블 장비
		
AI 기반 지능형 CCTV를 통해서 작업장 내 안전상황 파악	지능형 영상분석(위험상황 머신러닝), 작업자 위치 관리 등 통합 안전관리	근력보조장치를 통해 작업 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

- 위험한 작업환경 모니터링 및 제거·개선, 중대재해 원인 파악을 목적으로 한 CCTV 설치 제도화('23.~, 법 개정)

### 3 스마트 안전장비 공급 체계 구축

- (개발) 대기업·대학(연구소)과 민·관 협력 MOU\* 등을 통해 스마트 안전기술·장치 연구·개발 활성화('23.~)
  - \* 고용부-과기부 스마트 안전 MOU('22.11.21.), 주요 대기업(대학) 기술협력 MOU 등 확산
- 미래전문기술원(안전공단 內) 중심으로 新 안전기술 창업지원(벤처, 스타트업 등) 연계, 안전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
- (인증) 「<sup>가칭</sup> 스마트 안전보건인증 위원회\*」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 효과가 있는 민간 개발 스마트 안전장비 등 신속 인증('23.~)
  - \* 중대재해 예방 효과성, 유지·관리 및 보급·확산 용이성 등을 종합 평가·심사
- (보급·확산) 「스마트 안전 시설·장비 지원 사업」 지속 지원
  - \* '23. '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'을 통해 스마트 안전장비 신규 지원(250억원)
- 대기업이 자체 개발한 스마트 안전 장비 등은 협력사(계열사)로 확산 유도(대·중소 상생 협력 프로그램 참여 시, 가점 부여 등)

## 3. 추락·끼임·부딪힘: 3대 사고유형 현장 중심 특별 관리

※ 추락(42.4%)·끼임(11.5%)·부딪힘(8.7%) 사고가 전체 사고사망의 63% 수준('21.)

### 1 3대 사고유형 8대 요인 특별 관리

- **추락** 비계, 지붕, 사다리, 고소작업대, **끼임** 방호장치, LOTO(Lock Out, Tag Out), **부딪힘** 혼재작업, 충돌방지장치 등 8대 요인 중심으로 특별 관리

#### 1 8대 요인 핵심 안전수칙 점검 강화

- 점검 시, 8대 요인 핵심 안전수칙\* 준수 및 근로자의 위험 인지·공유 여부 필수 확인

- \* ▲ 추락예방: 작업발판·안전난간·추락방지망 설치, 개구부 덮개 설치 등
- ▲ 끼임예방: 덮개·울 설치, 정비·보수작업 시 운전정지, 잠금조치, 표지판 설치 등
- ▲ 개인 보호구 착용: 안전모, 안전대, 안전화 착용 등

- 근로자 인터뷰 방식 등을 활용하여 LOTO, 혼재작업에 대한 기획 점검 강화

LOTO	• 위험기계·기구 다수 보유 사업장에 대한 점검·지도 강화
혼재작업	• 대형물류창고, 유통업체, 사내하청 다수 사업장 등 불시 감독

## ② 위험성평가 및 핵심 안전수칙 지도·교육

- 위험성평가 결과가 반영된 작업계획서 마련, TBM을 통한 위험공유 상시화(모바일 앱), 8대 요인 핵심 안전수칙 교육·홍보 등 강화

## ③ 요인별 안전관리 여건·특성에 따라 맞춤형 관리

지 붕	• 농협, 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안전수칙 홍보·지도
사다리	•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에게 자체 사전 작업 허가, OPS(One Point Sheet) 방식 위험성평가 실시
고소작업대	• 2인 1조 작업 지도·권고    • 안전모·안전대 필수 착용 교육
방호장치	• 민간 기술지도 시 방호장치 유무, 무단해제 여부 등 확인 의무화 • 위험기계 보유 등 고위험기업(50인 미만)은 '안전일터 패키지' 지원

## ④ 스마트 안전장치·설비 비용 등 지원 확대

방호장치	• 자동 비상정지장치(인터락) 등 지원 확대
충돌방지장치	• 긴급제동장치, 작업자-신호수 간 무선통신장치 지원 확대
비 계	• 시스템 비계 등 신규 개발 및 지원 확대
지 붕	• 채광창 덮개 지원 확대

## ② 핵심 안전수칙 위반 시 엄정 조치

- 8대 요인 핵심 안전수칙 위반 및 중대재해 발생 시, 무관용 원칙 적용

☞ 3대 사고유형 8대 요인 특별관리대책은 '23년 산업안전 감독계획에 반영

## 4. 원·하청: 안전 상생 협력 강화

### 1 원·하청 간 안전관리 역할 명확화



- [원청] 파견법 위반 때문에 하청 근로자에게 안전확보 지시를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.
- [하청] 원청과 하청이 안전확보 역할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.

- **현행 산안법령 체계 내 원·하청 기업 간 역할·범위 등을 명확히 제시**(‘23. 가이드라인 마련)
  - \* (예) ▲ 안전보건을 위한 원청의 하청 작업지시 등이 불법파견 소지가 없도록 기준 명확화
  - ▲ 표준 안전관리 도급 계약 체결(하청의 안전보건 확보 사전 명시)
  - ▲ 원·하청 공동 위험성평가 실시 등
- **중층적 도급관계에서 중간 하수급인의 법적 책임 명확화**(‘24. 법 개정)

### 2 대 - 중소기업 상생 협력 지원 강화

- **대기업(원청)의 중소기업(협력업체) 위험성평가 역량 향상 지원 등을 위한 「대 -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 협력 사업\*** 확대(‘23.~)
- \* 現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확대·개편(‘22: 5.3억원 → ‘23: 99.1억원)
- **협력업체 지원 등 상생 협력 우수 대기업에 대해서는 동반성장 지수 평가 시 우대**(공정위, ‘23.~)

### 3 원청(대기업)의 「Safety in ESG」 경영 확산

- **산업안전 관련 사항(예: 안전관리 강화 등)을 ‘지속가능경영보고서\*’에 포함·공시**(‘25.~), **ESG 평가 기관 활용 유도**(금융위)
- \* (現) 자율적 운영 → (‘25.~) 일정 규모(예: 자산 2조원) 이상 코스피 상장사 의무화
- **산업안전 등 ESG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 검토**(‘24, 금융위)



## 5. 새로운 위험요인: 산업구조 및 기후 변화 등 대비

### 1 특고·플랫폼 종사자의 산재예방 역량 강화

- 최초 입직 시 건설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기초안전보건교육 도입\*, 2~3년마다 보수교육 의무화('24.~, 법 개정)
  - \* 특정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
- '1인 작업자'(lone-worker)에 대한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마련·배포('23.)
  - \* 배달업 종사, 유지·보수(엔지니어), 청소·경비 등에 대해 직종별 안전보건교육, 산재 예방 정보, 스트레스 관리 등 정보 제공

### 2 고령근로자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마련

- 직무 위험도 분석을 통해 고령자 신체·정신적 특성을 반영한 「가칭 고령 근로자 안전보건 가이드라인」 마련·배포('23.)
  - \* (예) 중량물 등 안전보건 기준, 작업 속도, 근로시간 휴게 기준 등

### 3 계절적 위험요인 사전 경보 및 대응 체계화

- 폭염, 한파 등 계절적 위험 요인에 대한 위험상황 경보 발령 및 매뉴얼(예방 가이드) 마련·보급('23.)
- 지침·가이드는 SNS·지역 네트워크\*를 활용, 현장까지 전달('23.)
  - \* 안전관리자 SNS, 공단·민간재해예방기관 네트워크, 지자체 협업 등 활용

### 4 환기, 직업성 암 등 새로운 위험요인 관리

- 급성중독 예방에 필수적인 국소배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\*하고, 위험성평가 시 환기 여부를 진단('23.~)
  - \* 설치비용의 50% ~ 70% 내 최대 5천만원 지원
- '직업성 암 안심센터' 지정 등 위험성 추정·분석을 위한 집중 관리·예방체계를 마련하고, 지역·직종별 직업성 암 지도\* 구축(~'24.)
  - \* 각종 산업보건DB를 통합·분석, 지역·성별·업종별 직업성 암 고위험군 추정 및 지도상 시각화  
↳ (예) 폐암-제철·광업, 혈액암-전자산업, 후두암-중공업, 간암-플랜트건설업, 방광암-운수업 등
- 직업성 암의 조기 발견·치료를 위해 발급되는 건강관리카드 대상 확대(예: 조리흡에 장기 노출된 은퇴 근로자 등, '23~)

☞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등을 위한 '산업보건 혁신방안' 마련·추진('23.下)

- ❖ 「자기규율 예방체계」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주체로서 근로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, 참여 확대 필요
- ❖ 노·사가 참여하고, 국민이 공감하는 안전문화·관행을 조성하여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감축될 수 있는 여건 마련

## 1. 근로자의 안전보건 책임 및 참여 확대

### ①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의무 확립

- 안전보건 '주체'로 기본 역할\*과 안전수칙 준수 의무 명확화('23.~, 법 개정)
  - \*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, 작업 시 안전행동, 안전보건 교육 등
- 안전수칙을 반복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제재 사유·절차 등을 포함한 「가칭 표준 안전보건관리규정」 마련·보급('23.)
  -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사업장 단계적 확대(現: 100인↑ → '26: 10인↑), 안전 분야의 취업규칙으로 활용되도록 제도화('23. 법 개정)
- 취업규칙 작성 시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따라 포상과 제재가 가능토록 지도('23.~, 표준취업규칙에 반영)

### ② 근로자의 안전보건 참여 확대

- (협의체) 산업안전보건위원회(現 100인↑), 건설업 노사협의체(現 120억↑) 의무설치 대상을 30인·50억 이상으로 확대('23, 산안법 시행령 개정)
- (명예산업안전감독관) 규모·위험요인별 적정 업무·인력 수준(現: 사업장 당 1명 원칙) 제시 및 활동 시간 보장 → 추가 위촉 유도('23)
  - \* 적정기준 보다 추가 위촉 시 '안전일터 패키지' 등 재정지원 사업 우선 선정 등 인센티브 부여
- (근로자 작업중지) 작업중지의 구체적 범위·요건 등 매뉴얼 마련, 우수기업 선정(포상 등) 시 작업중지 활용 실적 반영('23.)
  - \* 중앙단위, 지자체, 산업단지, 업종별 노·사·정 실천협약을 통해 활성화 추진('23.~)
- (근로자 제안) 현장 근로자 안전개선 제안(例: '○○현장 안전신문고')을 활성화 → 채택 시 실질적 보상 등을 통한 선순환 유도('23.)
  - \* '안전보건협의체'에서 근로자 안전제안 심의, 정부는 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지원

## 2. 범국민 안전문화 캠페인 확산

### ① 중앙-지역-업종별 특화 캠페인 강화

- (중앙) 상시적인 안전보건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중앙 단위 '노사정 안전일터' 공동 선언
  - 산업·직종별 노·사가 함께 참여\*하는 범국민적 안전보건 캠페인 의제, 실천 방식 및 전국적 확산 방안 마련
  - \* [독일] 조합주의에 기초한 지역·업종별 자율 예방규칙 제정 준수
- (지역) 지역 내 안전보건 기관 간 '안전문화실천 추진단' 구성·운영
  - 3대 사고유형 8대 요인 핵심 안전수칙 위주로 공동·협업 캠페인
- (업종별) 위험요인별, 계절·시기별로 위험경보 발령 및 특화 캠페인 전개, 안전수칙 가이드 배포



- 중대재해 발생 없이 건축물 완공 시, '안전명품건축물'로 브랜드 홍보 → 건설 안전문화 확산

### ② 「산업안전보건의 달」 등 신설

- 「산업안전보건의 달\*(7월)」을 신설·운영(現 7월1주 강조주간) → 전국적 노·사 참여 안전활동 장려 및 범국민 안전 캠페인\*\* 확산(23.~)
  - \* [호주] 10월, 국가 안전작업의 달, [미국] 3월, 국가 사다리 안전의 달
- 매월(例: 4일) 「안전일터 조성의 날」, 특정 시기별 「사망사고 예방 특별 강조 주간\*」 신설(23.~) → 노·사 공동현장 점검·개선 확산
  - \* [미국] 5월 첫째 주를 건설현장 추락 예방을 위한 안전휴식(Stand-down) 주간으로 지정

### ③ 한국형 안전문화 평가 지표(KSCI) 도입·확산

- 기업 안전의식 수준, 노·사 참여도, 안전제안제도 운영 등을 반영한 한국형 안전문화 평가지표(Korea Safety Culture Index) 마련·보급(24.)
  - 기업 자체적으로 평가지표별 노·사 공동 안전문화 활동 증진

### 3. 안전보건교육 내용 및 체계 정비

#### 1 TBM 등 현장 중심 교육 확대·강화

- (근로자) 강의 방식 외에 현장 TBM 활동, 포럼·세미나 등 참여를 안전보건교육 이수 시간으로 인정(23.~)
  - 정기교육(年 24H), 채용시 교육(8H) 과정에 위험성평가 내용을 필수적으로 반영
  - 유해·위험작업 특별교육\*(16H)은 산업·기술 변화를 반영하여 현장에 맞게 교육대상을 재조정
- \* (現) 타워크레인 설치·해체, 전기작업 등 39개 작업 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실시
- (외국인) 산업단지,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, 지역별 커뮤니티 등과 연계, 국가별 안전보건교육 과정 개설 → '찾아가는 외국인 교육' 확대(23.~)
- (CEO) 안전경영 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50인 미만 기업 CEO 대상 안전보건교육 기회 확대·제공(23.~, 한국기술교육대학교 內 'Safety MBA' 개설 추진)

#### 2 생애 안전보건 교육 확대·강화

- (학령 단계) 초·중·고(직업계고) - 대학 등 학령 단계별로 안전보건교육 확대·제공(23.~, 교육부)
  - \* ▲ [초중고]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의 직업안전교육 내용 강화
  - ▲ [직업계고] 산업안전보건 교과서 개발(~'24.), 교원 직무 연수교육 등 역량 강화(23.~)
  - ▲ [대학] 공학 관련 학과의 교양 필수과목 지정 유도·확산(23.~, 고용부)
- (구직 단계) 구직자 대상 직업훈련(1.5만개) 및 재취업지원(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등) 시 안전보건교육 포함(23.~)

#### 3 안전보건 교육 콘텐츠 및 인프라 내실화

- (콘텐츠) MZ세대를 위한 슷폼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 개발, 메타버스 등을 통해서 콘텐츠 제공(23.~)
  - 위험 기계·기구, 화학물질 등 현장 위험요인별 교육 콘텐츠 개발·보급
- (우수기관 육성) 교육 질적 수준 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 등을 통해 질 높은 교육 서비스 제공·확산 (23.~)

❖ 현장 중심형으로 중대재해 감축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 접점으로 직접 서비스를 전달하는 기관 간 협업·거버넌스 구축 추진

## 1. 산재예방 전문기관 기능 재조정



현재 모습

- 안전공단, 민간재해예방기관 등 산재예방 전문기관의 전문성 부족 및 연계 미비
- 안전공단은 본연의 지원 업무보다는 감독기관의 보조기관화 되었다는 비판  
민간기관은 소규모기관 난립, 가격덤핑 등으로 기술지도 서비스 부실 우려

### ① 민간 재해예방기관 전문성 제고

\* 민간재해예방기관: 안전·보건·건설 등 13개 분야, 1,368개 기관('22.7월)

- 양질의 종합 기술지도·컨설팅을 제공하는 「안전보건 종합 컨설팅 기관」 육성(자체 대형화, 컨소시엄 시 각종 평가에서 우대)
- 평가체계를 개편하여 위험성평가 컨설팅 실적 및 중대재해 감축 성과 위주로 평가, 형식적 서류 점검은 축소('23.~)
  -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\* 확대('23.~)

\* 공공기관 안전관리 용역 발주 시 가점 등

### ② 안전공단의 중소기업 지원 기능 강화

- 공단의 중소기업 지원 기능(기술지도, 재정지원 등) 확대·개편\*, 위험성 평가제 전담 조직 신설
  - \* (예) ▲ 본부: '중소기업지원본부' 신설 → 각종 지원 서비스 통합 제공
  - ▲ 일선: 분야(안전, 건설, 보건 등)별 조직 체계를 중소기업 서비스 중심으로 조정
- 연구·교육, 사고조사 등의 업무를 공단에서 분리하는 방안(예: 별도 산하기관, 고용부 소속기관 등) 검토·추진

## 2. 비상 대응 및 상황 공유 체계 정비

### 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응급의료 비상 대응체계 정비

- **(초동 조치) 응급상황 초동 대처**를 위해 사업장(현장) 근로자 대상 CPR(심폐소생술) 교육\* 및 AED(자동제세동기) 보급 확대('23.~)
  - \* 사업주의 CPR 교육시간을 의무교육시간으로 인정, 기초안전보건교육 시 CPR 교육 포함  
↳ '26년까지 사업장 내 CPR 가능자를 50% 수준으로 확대
- 응급상황 시, 동료들이 비상 상황을 즉시 알릴 수 있는 '비상상황 알림 시스템' 구축 지원('23.~)
- **(비상대응) 현장 인근 응급의료기관 위치·연락처 등 현행화** 및 게시(안전보건책임자 업무 범위에 추가) 의무화('23.~, 법 개정)
  - 사업장(현장)별 비상상황 초기대응(CPR), 응급의료기관 이송경로 등을 포함한 「현장 비상상황 대응 가이드라인」 마련·보급('23.~)
- **(응급처치·진료) 골든타임 준수**를 위해 응급실·외상센터 확보 → 중증응급 진료 수준을 상급 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포함·반영('24. 복지부)
  - 지자체, 응급의료기관 등과 연계한 지역 외상체계 구축 및 산재병원 재활센터 지원 등을 통해 조속한 일터 복귀 지원

### ② 중대재해 상황 공유 및 정보관리 체계 구축

- 가칭 산업안전비서\* 챗봇 시스템 및 도로 교통사고전광판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중대재해 속보 전파·공유('23.)
  - \* 행안부에서 운영 중인 국민비서(구뵘)를 참고, 산업안전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
- 지자체, 직능단체(노·사, 업종별협회 등), 민간기관, 안전관리자 네트워크 등 지역 유관 연락망 구축 → 사고속보 문자 전송('23.~)
- 산재 보고, 지원사업 신청·확인, 산재예방 정보(법령·지침)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종합 포털(가칭 '산재예방 365') 구축('23. ISP 수립)
  - 중대재해 상황(사고속보) 및 분석(재해조사의견서 DB 분석)에 기반, 지도형태로 시각화한 사고 분석·공개 플랫폼을 포함·구축

### 3. 중앙 - 지역 간 협업 거버넌스 구축

#### ① 지역, 업종이 주도하는 특화 예방 사업 추진

- (지역) 지자체가 지역 여건별(예: 신도시 개발 등) 자체 예방 사업을 추진할 경우,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검토

##### 지자체 자체 예방 사업(사례)

- 초소규모(1억원 미만) 건설현장(축사·공장 지붕 보수, 인테리어 등) 산재예방
- 외국인 근로자, 플랫폼 종사자 안전보건센터(예: 쉼터 등) 인프라 조성
- 산업단지 신규근로자 중심 민·관 합동 체험형 안전교육장 구축 등

- (업종) 업종별협회 등에서 업종별(밀집 지자체 연계) 특화 예방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할 경우 정부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

\* (예) ▲조선업: 하청근로자 보호 ▲화학업: 화재·폭발예방 ▲폐기물처리업: 끼임사고 예방 등

#### ② 지역·현장 중심 협업 전달체계 강화

- 광역 지자체 단위 안전보건협의체\*(민·관 공동 업종별협의체) 활성화  
→ 지역 단위 산재예방 총괄(기초 지자체 산재예방 계획 협의·의결)

\* 지방관서, 안전공단, 민간재해예방기관을 중심으로 지자체, 노·사단체, 지역별 업종협의회·안전보건협회, 산업단지공단 등 공동 참여

- 지역 내 정부 지원사업(안전일터 패키지, 소규모기업 인증 등)에 참여 기업의 실적 평가 시, 의견 제시

- 중앙정부 예방정책이 지역 주민, 개별 근로자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'지방관서 - 지자체 - 안전관리자' 간 네트워크·협업 체계 구축

\* ▲(지자체) 주민센터 공무원을 '안전관리 파수꾼'으로 지정, 각종 예방 정보를 생활밀착형 제공  
▲(안전관리자 NW) 지역 내 건설, 화학 등 업종별 안전관리자 네트워크를 전달체계로 활용

- 지자체의 건축 인·허가, 착공신고 시 정보 연계(지방관서, 공단) 강화, 근로자에게 실시간 정보 제공이 가능한 '스마트 건설안전 앱' 활성화

## V. 추진 체계 및 향후 일정

### 1

### 추진 체계

- (조직) 위험성평가 중심의 '자기규율 예방체계' 구축 지원을 위해 고용부(산업안전보건본부), 지방노동관서, 안전공단 등 조직 체계 정비
  - 산업안전보건본부 내 「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TF」 신설 → 로드맵 이행 관리 전담·총괄
- (이행·점검) 과제별 세부 이행계획 마련, 이행상황 모니터링 → 정기점검\*(내부) 및 정책평가(외부) 등 실효적인 이행·점검 관리
  - \* ①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, 관계기관 실장급 참석 점검회의(반기별) 개최
  - ②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, '이행현황 점검 회의' 분기별 개최
- 수정·보완이 필요한 과제는 노·사 및 전문가,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선안 마련 및 세부과제 조정 진행
- (신속추진) 현행 법령체계, 예산 범위 내에서 즉시 이행 가능한 과제\*는 '23년부터 신속히 착수 → 가시적인 감축 성과 도출
  - \* 위험성평가 개편·내실화,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정기감독 전환, 3대 사고유형 8대 요인 특별관리, 범국민 안전문화 캠페인 확산, 안전보건교육 강화 등
- 법령 개정 및 예산 수반 과제\*는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정기적인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
  - \* 위험성평가 단계적 의무화 추진, 산업안전보건 법령·기준 정비, 근로자 참여 확대 관련 법령·제도개선, 지역·업종별 특화 예방사업 추진 등

### 2

### 향후 일정

- (현장 설명회) 전국 감독관 회의(12월초), 권역별 「중대재해 감축 로드맵」 설명회 개최(12월 중, 지자체·지방관서·공단·민간기관 등)
- (역할·비전 선포식) 주요 대기업·협력사, 공단, 민간재해예방기관 등 안전보건 주체들이 로드맵 추진을 위한 각자의 역할·비전을 제시(12월 중)



추진 과제	담당부처	일정
<b>1. 위험성평가 중심의 「자기규율 예방체계」 확립</b>		
<b>① 예방과 재발방지의 핵심수단으로 위험성평가로 개편</b>		
① 위험성평가 단계적 의무화 추진	고용부	'23.~
②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및 모델 보급	고용부	'23.
③ 위험성평가 전 단계에 걸쳐 근로자 참여 확대	고용부	'23.
④ TBM 활용 가이드 마련·보급	고용부	'23.
⑤ 모바일 APP 개발·보급	고용부	'23.
⑥ 위험성평가 운영시스템 구축	고용부	'23.
<b>② 산업안전 감독 및 행정 개편</b>		
① 위험성평가와 예방 중심으로 정기감독 전환	고용부	'23.~
② 빅데이터 및 AI 분석 기반의 감독대상 선정	고용부	'23.~
③ 골든룰(Golden Rule) 위반 사고 무관용 원칙 수사	고용부	'23.~
④ 중대재해 발생 여부를 산재보험료율에 반영	고용부	'24.~
<b>③ 산업안전보건 법령·기준 정비</b>		
① 안전보건기준규칙 현행화	고용부	'23.
② 위험성평가 관련 법령·기준 정비	고용부	~'24.
③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간 정합성 제고	관계부처	'23.~
④ 산업안전보건 법령 개선 TF 운영	고용부	'23.~
<b>2.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 지원·관리</b>		
<b>① 중소기업: 안전관리 역량 향상 집중 지원</b>		
① 중소기업 「안전일터 패키지」 프로그램 제공	고용부·국세청	'24.~
② 맞춤형 안전시설 및 인력 지원 확대	고용부	'23.~
③ 민간 기술지도를 위험성평가 기반으로 전환	고용부	'23.~
④ 소규모기업 대상 안전보건 인증제 마련	고용부	~'24.
<b>② 건설·제조업: 스마트 기술·장비 중점 지원</b>		
①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·지원	고용부·국토부	'23.~
② 제조 공장 스마트 안전관리 확산	고용부·중기부	'23.~
③ 스마트 안전장비 공급 체계 구축	고용부	'23.~
<b>③ 추락·끼임·부딪힘: 3대 사고유형 현장 중심 특별 관리</b>		
① 3대 사고유형 8대 요인 특별관리	고용부	'23.~
<b>④ 원·하청: 안전 상생 협력 강화</b>		
① 원·하청 안전관리 역할 가이드 마련	고용부	'23.
② 대·중소 상생 협력 프로그램 지원 확대	고용부	'23.~
③ 상생 협력 우수 대기업에 대해 우대 지원	고용부·공정위	'23.~

추진 과제	담당부처	일정
④ 산업안전 공시(지속가능경영보고서)	금융위	'25.~
⑤ ESG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	금융위	'24.~

⑤ 새로운 위험요인: 산업구조 및 기후 변화 등 대비		
① 특고·플랫폼 종사자 기초안전보건교육 도입	고용부	'24.~
② 1인 근로자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마련	고용부	'23.
③ 고령 근로자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마련	고용부	'23.
④ 계절적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상황 경보 발령 및 매뉴얼 보급	고용부	'23.~
⑤ 국소배기장치 설치 지원	고용부	'23.~
⑥ 직업성 암 지도 구축	고용부	~'24

### 3.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

① 근로자의 안전보건 책임 및 참여 확대		
① 근로자 안전수칙 의무 규정 신설	고용부	'23.~
② 표준안전보건규정 마련 및 취업규칙 지도	고용부	'23.~
③ 근로자 참여 확대	고용부	'23.~

② 범국민 안전문화 캠페인 확산		
① 중앙-지역-업종별 특화 캠페인 전개	고용부	'23.~
② 산업안전보건의 달 신설	고용부	'23.
③ 한국형 안전문화 평가 지표(KSCI) 도입	고용부	~'24.

③ 안전보건교육 내용 및 체계 정비		
① 현장 중심의 교육 확대·강화	고용부	'23.~
② 생애 안전보건교육 체계화	고용부·교육부	'23.~
③ 안전보건 교육 콘텐츠 및 인프라 내실화	고용부	'23.~

### 4.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

① 산재예방 전문기관 기능 재조정		
① 민간 재해예방기관 전문성 제고	고용부	'23.~
② 안전공단 기능·조직 개편	고용부	'23.~

② 비상 대응 및 상황 공유 체계 정비		
① 응급의료 비상 대응체계 정비	고용부·복지부	'23.~
② 중대재해 상황 상시 공유체계 구축	고용부	'23.~
③ 산재예방 종합 포털 구축	고용부	~'25.

③ 중앙-지역 간 협업 거버넌스 구축		
① 지역·업종 특화 예방사업 추진	고용부	'24.~
② 광역 안전보건협의체 활성화	고용부	'23.~

## 붙임2

## 주요 선진국 중대재해 예방 체계 및 안전문화 사례

- 주요 선진국은 「자기규율 예방체계」 구축 및 안전의식·문화 조성 등을 통해 중대재해 감축 성과 시현

 영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(현황) '18년 사고사망만인율 0.08‰                          ▲ ('01)0.08 → ('18)0.08‰ ▲ 1인당 GDP 3만달러시('02) 0.07‰</li> <li>■ (예방체계) ①위험제거비용이 위험으로 발생할 피해보다 크다면, 위험에 대처할 의무를 면제, ②<b>목표만을 제시하는 규제</b>를 통해 기업에 <b>달성방식에 대한 자율성 부여</b></li> <li>■ (안전문화) 자율에 따른 결과 책임을 엄격히 부여하는 문화 조성, 기업과실치사법의 무제한 벌금형 등에 따라 <b>"이익을 보는 자가 손해를 지는"</b> 안전의식 내면화</li> <li>■ (집행기관) 1974년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집행하는 <b>노동연금부의 외청</b>으로 각 부처 안전보건분야를 통합하여 HSE설치</li> </ul>
 독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(현황) '20년 사고사망만인율 0.07‰                          ▲ ('01)0.30 → ('20)0.07‰(0.23‰p ↓ △77%) ▲ 1인당 GDP 3만달러시('95) 0.42‰</li> <li>■ (예방체계) <b>노사자치입법</b>으로 재해예방규칙(UVV) 제정, 산업환경에 맞는 <b>기업 자율 산재예방활동</b>이 정착될 수 있는 법체계 도입</li> <li>■ (안전문화) 조합주의에 기초하여 사업주 및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지역·업종별 노사자치입법을 통해 <b>자율 예방규칙을 제정·준수</b>하는 안전문화 확산</li> <li>■ (집행기관) ·연방정부: 법제도 수립 총괄 ·주정부: 법규 집행·감독                          ·재해보험조합(DGUV): 안전보건 기술 지원</li> </ul>
 일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(현황) '21년 사고사망만인율 0.15‰                          ▲ ('01)0.33 → ('21)0.15‰(0.18‰p ↓ △55%), ▲ 1인당 GDP 3만달러시('92) 0.46‰</li> <li>■ (예방체계) ①일본 산안법은 사업주 책임의 <b>자율안전관리 촉진</b> 체계를 갖추, ②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<b>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비율</b>이 70~80%수준</li> <li>■ (안전문화) <b>'위험예지훈련(TBM방식)</b>을 사회적 운동화하고, 재난대응 등 안전매뉴얼 준수 관행을 확립함</li> <li>■ (집행기관) 후생노동성 노동기준국 산하 지방조직 소속 노동감독관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집행</li> </ul>
 미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(현황) '19년 사고사망만인율 0.35‰                          ▲ ('01)0.43 → ('19)0.35‰(0.08‰p ↓ △19%), ▲ 1인당 GDP 3만달러시('97) 0.47‰</li> <li>■ (예방체계) 업종별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기준 마련, 연방정부 모니터링 하에 각 주가 <b>자율적으로 산업안전 규제방식</b>을 선택</li> <li>■ (안전문화) 중요 사건에 대한 <b>감독결과를 대대적으로 공표</b>(사업장정보 포함)하여 동종·유사업종의 재발방지 경각심 제고 → 전략적 안전문화 확산 추진</li> <li>■ (집행기관) 1970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연방노동부 외청으로 OSHA 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  * 주요업무 : ①산업안전·보건 기준 제정, 작업장 준수 감독 ②안전관리지원사업 수행</li> </ul>

### 붙임3

## 중대재해 감축 목표 설정 근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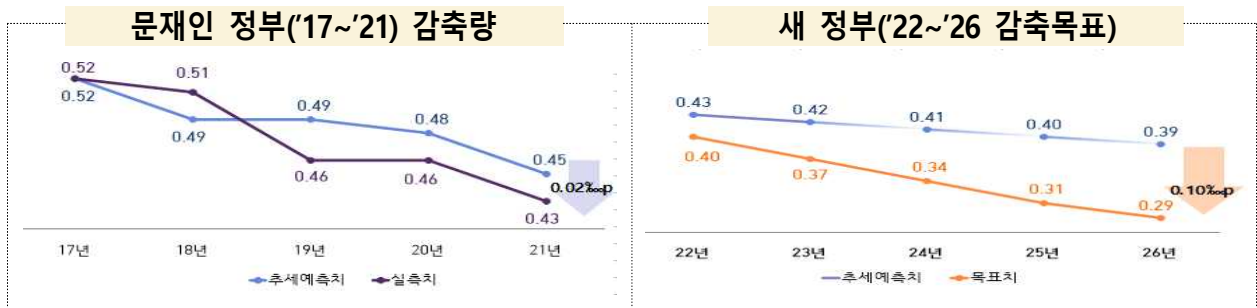
- 사고사망만인율(=사고사망자 수/근로자 수) 장기 추세
    - (분석의 기초) 근로자 수는 인구 수준, 사고사망자 수는 경제력 수준(1인당 실질GDP)의 영향만 받는다고 가정
      - 정책적 노력을 배제, 경제적 요인에 의한 자연적 증감추세를 추정·분석
    - (장기추세) 인구추계를 통해 근로자 수를 추정, 1인당 실질GDP 추계를 통해 사고사망자수를 추정하여 '22~'26년 사고사망만인율을 예측
      - \* 20년간('01~'21.), 인구-근로자 수, 1인당 실질GDP-사고사망자 수의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,
        - 인구 1명↓ ⇒ 근로자수 2.16명↓ · 1인당GDP 100\$↑ ⇒ 사고사망자수 2.28명↓
- ⇒ '21. 0.43 → '22. 0.43 → '26. 0.39‰, Δ0.04‰p 자연감소 예측

### □ 새 정부 중대재해 감축 목표 설정

- 우리나라 산업·인구구조 변화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, OECD 평균 수준의 도전적 감축목표 설정('21. 0.43 → '26. 0.29‰)
- ⇒ 자연감소예측 Δ0.04‰p + 정책적 요인 감소목표치 Δ0.10‰p 추가반영

※ (참고) '01~'16년 기준, '17→'21년 · 자연감소예측은 Δ0.07‰ · 실제감축량은 Δ0.09‰  
 · 정책적 노력에 의한 감축분 Δ0.02‰ ⇒ 정책적인 노력을 통한 0.10‰ 감축은 도전적인 목표치

< 새 정부 vs 문재인 정부 감축량(목표) 비교 >



[참고] OECD 국가별(38개) 사고사망만인율(‰) 현황 \* ILO에 보고된 최신연도 기준('14~'21 중)

국 가	만인율	국 가	만인율	국 가	만인율	국 가	만인율
콜롬비아	1.80('15)	포르투갈	0.27('20)	아일랜드	0.18('19)	벨기에	0.13('19)
코스타리카	0.97('16)	프랑스	0.26('20)	호주	0.16('17)	폴란드	0.11('20)
멕시코	0.75('17)	라트비아	0.25('20)	아이슬란드	0.16('20)	노르웨이	0.11('19)
터키	0.60('20)	오스트리아	0.25('19)	<b>일본</b>	<b>0.15('21)</b>	핀란드	0.11('19)
<b>한국</b>	<b>0.43('21)</b>	체코	0.23('20)	슬로바키아	0.15('21)	그리스	0.09('19)
<b>미국</b>	<b>0.35('19)</b>	뉴질랜드	0.23('15)	이스라엘	0.14('20)	<b>영국</b>	<b>0.08('18)</b>
이탈리아	0.34('20)	에스토니아	0.22('20)	헝가리	0.14('20)	<b>독일</b>	<b>0.07('20)</b>
리투아니아	0.32('20)	스페인	0.21('20)	덴마크	0.14('20)	스웨덴	0.07('19)
룩셈부르크	0.31('19)	캐나다	0.20('14)	스위스	0.14('19)	네덜란드	0.05('19)
칠레	0.31('18)	슬로베니아	0.19('20)	<b>평 균</b>		<b>0.29</b>	

